



과징금 및 과태료 분납

Q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날라와 기한 내(약 한달) 납부하라고 하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분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분납이 된다면 방법 및 절차도 궁금합니다.

A 과징금은 분할납부제도가 없으며,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오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Q 기존 오분법에 의해 만들어진 오수처리장이 향후 오분법이 폐지되고 하수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또 2007년9월27일까지는 유효한 오분법을 적용하여 새로이 짓게되는 오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완공일이 2008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통합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하수도 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장 및 건조시설의 THC배출허용기준

Q 금번 개정된 법률과 관련하여 THC 배출허용

| 환경 관리 질의 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자동차 도장 작업시 간헐적으로 도장실에서 약 1~2시간만 SPRAY도장 작업을 하고 동일한 ROOM(BOOTH)내에서 간접열풍을 공급하여 2~3시간 건조작업을 하므로, 통상적으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시 도장 및 건조시설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자동차 정비공장의 도장 및 건조시설에 대한 금번 개정된 THC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별표 8의 "(1)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 분체, 침지 도장시설을 포함한다.)"에 해당이 되어 배출허용기준 40ppm에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2)비연속식 도장 시설"에 해당이 되어 배출허용기준 200ppm에 적용을 받는지요?

A 2007. 1. 31일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도장 및 건조 작업을 하나의 시설(연속된 공정이 아님)에서 간헐적으로 도장하는 경우에는 비연속식 도장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2007. 7.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200ppm이하를 적용하면 될 것임.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Q 저는 경남에서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주의사항 기재를 하여야 하는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주의사항을 보면… 1.

배출자, 2.종류 및 성상, 3.사용개시 연월일, 4.수거연월일, 5.수거자, 6.중량이 있는데… 배출자가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 배출자는 4,5,6 번을 제외하고 1, 2, 3번만 기재하고 4,5,6번은 수집운반자 기재하여야 하는지.기재사항에 대한 기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재사항은 몇가지 빠졌을 경우 기재주체에 따라 처분대상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취급시 주의사항에 기재하는 사항 중 ①배출자 ②종류 및 성상 ③사용개시연원일은 배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④수거연원일 ⑤수거자는 수집·운반업자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중량은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계량을 실시하여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자가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에 대한 문의

Q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악취배출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였을 때, 신고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만약 악취배출시설 임차인에게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될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그 처분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A 악취배출신고의 주체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인 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 또한 임차인이 됩니다

적산전력계 부착대상여부

Q 당사는 생산공정 메인판넬 1기에서 동일한 전

원설비를 이용하여 여러대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동시에 가동하고있습니다. 즉 메인판넬의 전원을 켜면 전원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시에 가동되고, 전원을 끄면 모든 시설의 가동이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당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전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및 방법 중 1. 전산전력계 부착대상시설 나.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는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적산전력계를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동일한 전원설비를 사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및 중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전원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토양오염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 관련

Q 토양환경보전법 제 12조 2항을 보면 설치신고 시 의제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변경신고나 폐쇄신고를 할 경우에도 의제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유소(석유류 저장탱크 추가시) 동종 토양오염물질 용량 증가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되며, 변경신고나 폐쇄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토양오염물질 용량증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토양오염도검사(수시검사) 대상이 아닙니다